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6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이건태・이기헌・한준호

황정아 • 박지원 • 박지혜

곽상언 · 박균택 · 이수진

위성곤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,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 지 않음.

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. 또한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 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,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, 수어통역 등의 방식 으로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재판서 등의 작성) ① 재판서 또는 조서는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, 수어통역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8조의2(재판서 등의 작성) ①
	재판서 또는 조서는 피고인이
	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
	<u>여야 한다.</u>
	②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에
	는 점자자료, 수어통역 등 대법
	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
	으로 제공할 수 있다.